

짐바브웨 (Zimbabw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짐바브웨 거주하는 근로자	짐바브웨 거주하는 근로자 (특정 공무원 포함)	특별제도 범주였던 공무원이 일부 당연적용
보험료율 (근로자 / 사용자)	7% (3.5% / 3.5%)	7% (3.5% / 3.5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가입기간 10년, 60세	가입기간 10년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40년)	49.9%	49.9%	-
최대 / 최소 연금액	- / 60 US\$	- / 80 US\$	최대 연금액 ↑
일시금	가입자의 최종 연 가입소득의 8.33% × 납부연수	가입자의 최종 연 가입소득의 8.33% × 납부연수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89년(사회보장), 1993년(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- ※ 1988년 사회복지부조법에 따라 사회복지부는 제한된 공공부조를 60세 이상, 근로불능, 저소득층 피부양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함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고용된 짐바브웨 거주자(특정 공무원 포함)
- 적용제외 : 자영자, 비공식부문 근로자, 가사노동자
- 특별제도 : 군인,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가입소득의 3.5%
- 자영자 : 해당 없음

- 사용자 : 월 임금총액의 3.5%
- 정부 : 없음

※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\$700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60세 도달자, 45세부터 55세까지의 10년 중 7년 동안 위험직군에 종사한 경우 55세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 - 연기연금 : 65세까지 연기 가능
 - 노령보조금(퇴직보조금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60세 도달자(위험직군 종사자의 경우 55세)
 - 퇴직보조금은 65세까지 연기 가능
- 장애연금
 -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판정받았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
 - 장애보조금 :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근로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판정받았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

※ 장애는 의사에 의해 판단됨
- 유족급여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(우선순위)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5세, 영구장애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부모 및 기타 피부양자.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법정 후견인을 통해 사망자 자녀에 지급
 - 유족보조금 :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보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유족보조금 수급가능 유족 : (우선순위)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5세, 영구장애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부모 및 기타 피부양자
 - 장제비 : 보험료 납입기간인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한 유족에게 지급. 수급 가능한 유족은 사망원인이 산재가 아닌 경우 지급
 - 장례수당 :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제공됨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

- 퇴직 전월 가입자 월 소득의 1.33%에 30년까지의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과 30년 초과한 납부연수 당 월 소득의 1%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
- 월 최저연금액 : \$80

• 퇴직보조금

- 퇴직 전 가입자의 최종 연 소득의 8.33%에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연기보조금 : 퇴직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

- 납부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, 장애발생 전 최종 12개월 간 월 평균소득의 1%에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.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, 장애발생 전 최종 12개월 간 월 평균소득의 1.33%에 30년까지의 보험료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에 30년을 초과한 납부연수 당 월 소득의 1%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
- 월 최저연금액 : \$32

- 장애보조금 : 장애발생 전 가입자의 최종 연 소득의 8.33%에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40%를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

- 한명 이상의 수급가능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금은 균분 지급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부모에게 12%, 부모가 없는 경우 다른 피부양자들에게 8% 지급됨

- 월 최저연금액은 \$32

- 유족보조금 : 배우자 및 자녀에게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퇴직 또는 장애보조금의 40%, 한명 이상의 수급가능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균분 지급되며,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12%, 부모가 없는 경우 다른 피부양자들에게 8% 지급됨

- 장제비 :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일시금으로 \$300 지급

- 장례수당 : 국가사회보장당국 또는 민간 장례서비스를 제공함. 사망자가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유족은 국가사회보장당국의 장례비용 최대 \$500까지 상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

- 공공노동사회복지부(Ministry of Public Service, Labor, and Social Welfare)
 - 전반적 감독

- 국가사회보장국(National Social Security Authority)
 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www.nssa.org.zw

<2019년 ISSA 자료>